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도입('07년)된 이후 변화된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등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및 구체화(안 제76조제1항)

관리지역 지정기준 중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자연생태계 危害 발생지역 구체화, 도시지역 지정기준을 변경(인구100만이상→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함.

나. 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76조제3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작성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관리지역 우선 지정요건 신설(안 제76조제4항)

물순환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 탄소저감 관련 조례를 마련한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토록 함.

라. 권한 위임사항 개정(안 제81조제2항 및 제3항)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에 관한 권한위임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관련 조사·연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마.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관련 위임·위탁 정비(안 제81조제3항, 제84조제4항 신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위임업무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단절·훼손 기준 설정,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업무로 세분화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에 위임·위탁함.

바. 과태료 가중처분 차수 적용 명확화 및 인용조문 정비(별표 18)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지역”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구 100만 명”을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 각 호”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 등을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환경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물순환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순환 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

2.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

3. 탄소흡수원 조성 등 비점오염 및 탄소저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60조제7항”을 “법 제6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2 중 “법 제32조제8항”을 “법 제32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조사”를 “조사의 방법·절차 설정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 기준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6의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을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제81조제3항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중 “환경공정시험기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목 1)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성상(性狀)”을 “성질·상태”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8 제2호버목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2항제14호 및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소의 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소의 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81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 ----- “ <u>대통령령으로</u> ----- ----- -----.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 ----- “ <u>대통령령으로</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 제5호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 ----- “ <u>대통령령으로</u>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① <u>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① <u>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u>

1. (생 략)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 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다)---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 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생략)

5.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생략)

③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신설>

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 등을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
제출해야 ----. -----

-----.

④ 환경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물순환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순환 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u> 2. <u>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u> 3. <u>탄소흡수원 조성 등 비점오염 및 탄소저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역</u>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
법 제70조제10호에서 “ <u>대통령령이</u>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u>대통령령으로</u> -----
1. ~ 3. (생략)	-----.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1. ~ 12. (생략)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
13. 법 제44조(<u>법 제60조제7항</u>)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u>법 제60조제9항-</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 ----- --
14. ~ 16. (생략)	14. ~ 16. (현행과 같음)
17. <u>법 제60조제5항</u> 에 따른 개선명령	17. <u>법 제60조제7항</u> ----- -----
18. <u>법 제60조제6항</u> 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8. <u>법 제60조제8항</u> ----- -----
19. ~ 32. (생략)	19. ~ 32.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1. ~ 11의2. (생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u>법 제28조제1항</u> 에 따른 조사·측정	<u><삭제></u>
13. 삭제	
13의2. (생략)	13의2. (현행과 같음)
14. <u>법 제32조제5항</u>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4. <u>법 제32조제6항</u> ----- ----- ----- -----
14의2. <u>법 제32조제8항</u>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14의2. <u>법 제32조제9항</u> ----- -----

15. 삭 제

16. ~ 26.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신 설>

6의2. (생 략)

7. (생 략)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신 설>

16. ~ 26.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조사의 방법 ·
절차 설정 및 수생태계 연속
성 단절 · 훼손 기준의 설정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 · 측정 및 분석

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의3.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
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④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u>한국환경공단</u>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u>한국수자원공사</u>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u>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이 조에서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u> <u>다만, 제81조제3항제4호의 업무는 제외한다.</u> ⑤ ----- ----- ----- <u>한국환경공단</u>, ----- ----- <u>한국수자원공사</u> 및 <u>국립생태원</u>은 제1항부터 제4항-----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018